



불법명의 자동차(대포차)·불법 구조변경 등 시민안전을 위한

#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안내

선진교통질서 정착 및 도시환경정비를 위한  
**불법명의 자동차(대포차), 정기검사미필, 무단방치,  
불법 구조변경, 안전기준 위반 등의 불법자동차에**  
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 
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

## 일제 단속기간

**2026. 6. 8. ~ 7. 10. (1개월)**

※ 불법자동차 단속은 365일 계속됩니다.



## 단속대상

- ▶ 대포차 특별단속(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등)
- ▶ 화물차의 타이어 마모 및 휠 체결 상태 집중 단속
- ▶ 이륜차 단속강화(소음기개조, 번호판 가림등)
- ▶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단속

불법 LED 등 및 동화 장치 임의 개조, LPG 불법 변경, 화물칸 좌석 설치,  
소음기 임의 개조, 범퍼가드 임의 장착, 화물차 및 지프 차량 너비·높이 개조,  
등록번호판 훼손 및 위·변조, 속도 제한장치 미설치 및 고장 등  
※ 구조변경이 필요한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 
인증되지 않은 부품은 팔지도 사지도 설치하지도 않습니다.

- ▶ 미신고 등 불법 이륜자동차



## 위반자 처벌내용

- ▶ 불법명의 자동차(대포차) :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
- ▶ 무단방치 : 범칙금 통고처분(20~150만 원) 및 강제 폐차 처리
- ▶ 정기검사 미필 : 6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, 운행정지 및 번호판 영치
- ▶ 불법 구조변경 : 원상 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
- ▶ 기타 : 위반 유형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



## 신고기관

관할 구·군청 교통 관련부서  
(부산광역시 콜센터 120번 문의)

## 위반예시

